



제 42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36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법 제정 필요성	5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9
3. 주요 항목별 검토	11
(1) 목적	11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주요 개념 정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12
(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	17
(4)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기반 마련	21
(5)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	25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양성기관 지정 등	29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	31
(8)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집행 기반 마련	34
(9)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	36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6. 27.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소비를 필수 지출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로운 경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매해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32년에는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골자로 하므로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수출·투자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반려동물 식품 및 관련 용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등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연관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반려동물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

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과거의 단순한 사육·판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세분화·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류(안)]¹⁾

분류	개 념	주요 국내기업
펫푸드	반려동물 사료, 간식, 특수목적식 등 관련 산업 * 사료관리법 상 정의 :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	우리와 대주산업, 이글벳, 하림펫푸드
펫테크 (펫용품 포함)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용품 등 관련 산업 * 바이오 기술(헬스케어)이 펫테크 산업에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펄송(스마트 화장실), 펫펄스(웨어러블), 핏핏(검사 키트), 지오엠씨(뇌파 치료)
펫헬스케어	반려동물 질병 치료, 예방, 건강관리 등 관련 산업 * 펫헬스케어에 의료, 원격진료, 제약 등 산업 포함	십일리터(케어 솔루션), 핏핏(검사 키트) 에이아이포핏(진단 보조)
펫서비스	위탁관리, 미용, 플랫폼, 반려동물 호텔 등 반려동물 양육에 관련된 서비스 및 장묘 산업	버블클라우드(O2O), 우주펫(돌봄플랫폼), 아이엠디티(병원)

1) 관계부처합동,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8.9.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반려동물의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확대, 고령 반려동물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리며 촉진되었고,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권역별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²⁾]

단위(억 달러, %)

구분	2022년	2027년	2032년	연평균 증가율
북미	1,385	1,815	2,235	4.8
EU	372	457	625	5.5
아태	840	1,360	2,248	10.4
남미	225	308	454	7.4
중동·아프리카	12	13	15	2.5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여서 산업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낮은 편임. 아울러 관련 산업의 창업·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진출 지원 역시 인증·검역, 현지화, 마케팅 등 일부 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상황임.³⁾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투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2)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GMI), Pet Industry Market Size, Share and Growth Forecast, 2024.

3) 관계부처합동,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8.9.

4)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3조(영업의 등록) 등

또한 펫푸드,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세부 산업군별로 적용되는 현행 개별 법률(「사료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대체로 가축 중심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거나 반려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품질관리, 안전인증, 기술표준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기술 개발, 제품 상용화, 해외 인증 취득 및 수출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별 현행법 적용 및 제도적 한계]

분야	적용법률	한계점
펫푸드	사료관리법	▶ 가축용 사료 분류·표시기준, 반려동물 기호성·기능성 미반영 ▶ 영양학 관점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 미비
펫테크 (헬스케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반려동물 용품에 특화된 안전관리·인증체계 미비
동물용의약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 가축용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동물의약품(외약외품 포함) 별도 구분이 없어 산업 육성에 한계

따라서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지원, 창업·투자 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 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이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 진흥 기능을 전담하고,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먼저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법률의 목적과 반려동물 및 관련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과 진흥계획의 수립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규정하고,

세 번째로,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담기관의 지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보칙적 성격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체계 완비성을 위해 제정안을 총 4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제1장 총칙’,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2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

지를 ‘제3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4장 보칙’으로 구성하는 안임.

[제정안의 구성]

구 분(안)	내 용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6조(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제7조(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9조(특구에 대한 지원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제11조(벤처·창업 지원)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1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5조(해외진출 촉진 등)
보칙 등	제16조(청문)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3. 주요항목별 검토

(1) 목적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관련 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여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반려동물식품 및 관련 용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등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제정안 전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며, 현행 법률에서 미비한 산업 진흥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다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주요 개념 정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책적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본 법률의 적용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정책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은 제외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 2. “반려동물식품”이란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용의약품”이란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반려동물용품”이란 반려동물의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제품을 말한다. 5. “반려동물서비스”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6.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제외한다. 7. “반려동물연관사업자”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구성요소별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적용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운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반려동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⁵⁾개념을 기초로 하면서 제2호 ‘소유자 등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⁶⁾에서는 반려동물을 개·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⁷⁾로 한정하고 있어 양자 간 정의 범위에 차이가 존재함. 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책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나, 법 적용의 일관성과 실무상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심사과정에서 검토될

5)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필요가 있음.

둘째, ‘반려동물식품’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를 ‘영양, 건강 유지,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식품’ 및 ‘음식물’은 「식품위생법」 및 국어사전상 사람의 섭취를 전제로 한 개념⁸⁾으로, 동물용 제품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⁹⁾

또한, 현행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료’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를 ‘반려동물용사료’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용어 혼동 방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사료’ 또는 ‘반려동물용사료’ 등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 [표준국어대사전]

- ▶ 음식물 :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말
- ▶ 식품 :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2. “특정 동물성사료”란 소 등 반추동물의 소화면상뇌증 등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이 포함된 사료를 말한다.

- 9)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정안 제2조제2호에서 “반려동물식품”을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식품’ 및 ‘음식물’이라는 용어는 「식품위생법」상 사람의 섭취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제품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칫 기존 식품 개념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도 ‘반려동물용사료’ 등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셋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범위와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관련 제품·서비스의 제조·유통·판매·제공 등을 포함한 산업을 정의하면서, 「동물보호법」 제69조의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과 제73조의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중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의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와 동물보호단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¹⁰⁾을 고려하여, 향후 심사과정에서 범위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반려동물서비스’와 「수의사법」상 진료업 간의 경계 불명확한 점도 있는바, 제정안은 진료업을 제외한 서비스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활운동, 위생관리 등에서 양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¹¹⁾, 향후 심사과정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정의	비고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조	가축, 야생동물 제외

10) 관련 업계(동물생산·판매업체, 경매장 운영업체 등)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체 수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영세한 생산·판매업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생산·판매업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하여 「동물보호법」 체계 하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산업 성장의 주요 요인은 생산 확대가 아니라 동물복지 인식 제고에 있다고 보고 있음, 출처: 데일리벳,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동물생산업 포함 여부 ‘쟁점」, 2024.7.30., <https://www.dailyvet.co.kr/news/industry/253106>.

11) 예: 수의사가 재활운동을 해주는 건 ‘진료’지만, 일반 업체가 재활운동을 하면 ‘서비스’에 해당할 수도 있음.

용어	정의	비고
	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	
반려동물의약품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의 놀이, 운동, 휴식, 수면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제품	
반려동물 서비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놀이, 운동, 휴식 및 위생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활 일체에 관련된 서비스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
반려동물 연관산업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외
반려동물연관 사업자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자	

(3)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육성 목표, 기반 조성, 특구 지정 등이 포함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의 효율적 육성·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 정 안
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반려동물연관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육성계획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 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특히 실태조사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적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정책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향은 202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라는 3대 전략과도 부합하며, 이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제4조제1항에서 육성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지역 기반의 특성을 가지는 바, 지역 여건과 균형발전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4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은 입법기술상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¹²⁾하여 포괄 범위의 한계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의 위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제4조제3항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계획의 수립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할 경우, 민간 및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기반 마련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또는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와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 정 안
제6조(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3. 반려동물용품의 기술 검증, 제품인증 및 실증시설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운영계획을 수립한 지역일 것 ② 특구의 지정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구의 신청·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8조(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특구의 경우
2. 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특구의 경우

제9조(특구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연관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제품 등 인증시설 및 실증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및 사무용이나 그 밖의 물품의 양여 또는 무상사용
4. 대통령령에 따른 국유·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이하 “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 촉진사업
2. 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련된 사업
 - 가. 관리·유통·거래체계 구축
 - 나.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다. 유통·활용에 사용될 기준 제공
 - 라. 유통·활용에 대한 컨설팅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역적 기반을 강화하고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용품 제조, 의료, 서비스 등 관

런 산업을 연계·통합하여 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특구 지정은 지역 주민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는 지정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참고로 유사입법례(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관보 고시 및 관할 지자체 통보 절차를 명확히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역시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보 고시 및 주민 열람 관련 유사 입법례]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둘째, 제정안에서 규정한 국유·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임대료 감면 등은 실질적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동 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는 같은 법 별표에 등재된 법률을 통해서만 인정되고, 그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¹³⁾

따라서, 제정안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특례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본 법을 등재하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수적이며, 법률안 제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5)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향조사, 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 시제품 제작, 판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제 정 안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용품,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 조사 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창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3.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이하 “반려동물제품등”이라

제 정 안
한다)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반려동물제품등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반려동물식품, 의약품, 용품,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제품 다양화를 촉진하고,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기능성 펫푸드, 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R&D 확대와 창업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판로 확보 등 창업 전 주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법제화하여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연구개발 확대 계획]

□ (단기 프로젝트) **펫테크, 펫헬스케어 분야까지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기능성 펫푸드, 맞춤형 의약품·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관련된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22~'26, 314억)

* 기호성 사료첨가제, 피부질환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혈액 대체제, 뇌질환 진단키트 등 과제

-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현장 수요가 커지는 분야에 대해 **R&D 추진**('23~'28)

* 개념→선행→심화 연구로 진행되며, 최종 심화연구까지 지원받는 1과제당 총 약 39.5억원 지원

□ (중장기 기획)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장기 투자 필요 분야 기획**

- 부가가치가 높고 원천기술 확보부터 산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 필요 분야**에 대한 로드맵 마련(예타 병행)

* ('23~'24) 예타 필요과제 발굴·기획 → ('25) 예타 신청 → ('26 이후) 연구 수행

- 시스템 생물학, 줄기세포, 질병 완화, 바이오소재, 영양학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중점 투자

기술 분야	주요 연구개발 과제(안)
펫헬스케어	▶ (시스템 생물학) 신약 영향도 분석 가상 시뮬레이터, 가상 환자 모델링 등
	▶ (줄기세포) 치료 세포 분화, 줄기세포 생산, 면역거부 반응 등 기초연구
	▶ (노화) 임상학적·유전학적 신체나이 기준, 노화 지연 유전정보 등
	▶ (바이오센서) 생물학적 성분 신호 처리 기술(예 진단키트), 경구형 IoT 바이오 캡슐 등
펫테크	▶ (보조 로봇) 로봇틱스 장난감, 훈련·해동 보조 로봇 등
	▶ (모니터링) 활동량, 심박수, 호흡수, 감정 등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포착 등 관련 기술(웨어러블 디바이스, GPS 등)
펫푸드	▶ (질병 완화 등) 아토피 등 질환 맞춤형 처방식, 기호성 사료 첨가제 등
	▶ (영양학) 품종별·연령별 영양소 효용성, 종별·나이별 기초 영양 생리 평가, 기능성 사료 소재, 맞춤형 건강개선 기능성 소재 등
	▶ (바이오소재) 단백질 대체성 원료(곡류 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주원료 국산화 등

※ 자료: 관계부처합동,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8.9. 21p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계획]

□ (펀드·용자) **자펀드 신규 조성**, 저리용자 자금지원 등 **창업 초기자금 마련**

-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수 자펀드 신규 조성('24, 100억원)
- 펫테크 등 우수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저리용자 자금지원 확대('24)
 - * 기술창업지원자금 지원 대상에 펫테크 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원 확대
- 해외펀드, 정부 정책금융자금 관련 매칭을 위한 우수경영체 발굴, 투자 정보 등 공유 및 지원('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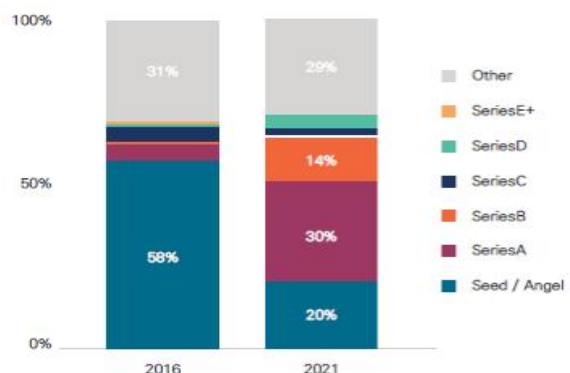
□ (투자유치) 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투자 매칭 기회 정례화**

- 연관산업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펀딩***, **기술평가 지원****, 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등 지원 확대('23~)
 - * 소액투자자 유치로 초기자금 확보 및 수요 파악(중개수수료, 전문 컨설팅 등 지원)
 - ** 기술가치 평가, 기술력 평가, 우수기술 평가, 소요자금 평가 등 지원
- 맞춤형 1:1 **컨설팅**, **사업설명회** 기회 제공 등 **투자유치 기회 확대**(‘24~)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내 지역별 투자지원센터를 활용, 투자유치 전·후 지원사업 추진
- 벤처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연 1회)

※ 국내외 투자 동향

- ▶ (국외) Series A 이상 투자 비중 '16년 11% 수준에서 '21년 49%로 증가
- ▶ (국내) '21~'22년간 투자유치 스타트업 60여개社, Series A 이상 42% 수준
 - * 펫푸드, 펫헬스케어, E-커머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 펫테크 글로벌 투자 비중(출처: CBInsights)>



※ 자료: 관계부처합동,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2023.8.9. 20p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양성기관 지정 등

제정안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반려동물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려동물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제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숙련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도입¹⁴⁾, 동물보건사¹⁵⁾ 제도 개선 및 양성기관 지정 등을 추진하며, 기질평가제도¹⁶⁾ 운영,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훈련·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맞춤형 인재 배출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련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교정하고 보호자 교육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돕는 사람(동물보호법 제31조)

15) 동물보건사: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수의사법 제16조의2)

16)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함.

(7)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 국제교류,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도하는 기업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해외진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제공 2.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4. 그 밖에 반려동물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제품등을 해외에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수출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판로 확보와 수출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도 유망시장 조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제품·홍보물 현지화, 해외 인증 취득, 법률·통관 자문 제공 등을 통해 반

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 관련 정책]

구 분	내 용
시장조사 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	(시장정보) 수출 전략국가 시장조사 및 정보 제공 ○ 유망시장(베트남, 중국, 호주 등) 국가 대상으로 시장조사 ○ 대사관과의 협조, 시장개척 요원(aT)을 통해 정보조사 병행
	(전시·박람회) 바이어 매칭 행사, 전시·박람회 참여기회 확대 등 판로개척 ○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 활용 K-펫푸드관* 별도 신설('23.11월) ○ 펫헬스케어 분야는 아시아 수의사대회(대전, '24)* 등 활용 수출지원 ○ 제품 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여 지원
	(제품·서비스 현지화) 법률 자문, 해외인증, 판매 촉진 등 현지화 지원 ○ 제품·홈페이지·카탈로그 현지화, 수출 현지 법률 자문 등 지원 ○ 수출 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수출바우처* 지원('23, 중기부 협업) ○ EU 등 중심으로 요구가 확대되는 해외규격인증 지원 강화('23, 중기부)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의약품·의료기기) 교육·홍보, 컨설팅, 임상시험 등 수출 소과정 지원 ○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희망 업체가 활용 가능한 GMP* 인증제도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대상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로 해외 수출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지원('23) ○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제품 육성 제품개발, 임상 시험 등 지원('23)
	(수출지원체계) 「수출지원협의체」 운영 등 수출통합 지원체계 구축 ○ 부처별 지원 사업 연계 및 정보제공, 협력과제 발굴, 주기적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23.下) ○ 기업 간 정보 공유, 해외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 ○ 수출기업 리스트(투자·수입 제안서 등) 제작 및 바이어 매칭 자료로 활용하도록 현지 공관, Kotra 무역관에 제공 (수출 검역) 對중국 펫푸드 수출 검역 조건 합의 등 수출 여건 조성 ○ 수출검역위생조건 의정서 합의 노력 지속('23) 및 후속절차* 추진 ○ 기존에 체결된 FTA(RCEP 등) 또는 향후 체결할 FTA, 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수출 진입장벽 해소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8)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집행 기반 마련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해외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담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제14조 및 제16조).

제 정 안
제13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업무 2. 제14조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제15조에 따른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책 집행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고, 산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산업 관리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특히 전담기관에 산업 전반의 실무 기능을 일괄 위임함으로써 부처별로 분산된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전담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외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수단이 없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 단계적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관련 업무를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관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제 정 안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반려동물연관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업무를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산업 육성 및 관리 전담기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위탁·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제129조~제132조)¹⁷⁾와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¹⁸⁾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책 집행 과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탁·위임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7)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 의 처

02)6788-5425

I 추진배경 및 현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개념) 사료, 진료,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
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Pet Care Industry or Market)
 ⇒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로 분류

□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양육 증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시장이 **확대·고급화되고,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개체수(개, 고양이): ('12) 364만/556만 → ('22) 602만/799만

○ **글로벌 기업은 인수합병 등 전문·규모화*하여 시장지배력 확대**

* Mars社 P&G 펫사업부 인수(29억달러, '14), General Mills社 Blue Buffalo 인수(80억달러, '18)

○ 주요 선진국에서는 펫푸드 등 연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신설*,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등 확대

* 미국·EU·일본 :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 추진

** 반려동물 기호 등 실증인프라 사례 : Royal Canin 펫센터(프랑스 미국), Mars 월썸센터(영국)
 중국 : 대규모 생산(저장성), 산업(산동성) 및 연구·창업(허난성) 단지 조성

□ 국내시장은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 내수시장 중심** 성장

* 세계/국내시장 규모(억달러) : ('22) **3,720/62** → ('32) 7,762/152 (연평균 7.6%↑/ 9.5%↑)

** 국내시장 유통 펫푸드 브랜드 비중 추정('21) : 국내 47%, 해외 53%

○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분류·표시·평가 등), R&D,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

* 예) 사료관리법의 가축용 사료 표시·분류(단미, 배합, 보조) 방식 그대로 활용

◇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필요**

○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

Ⅱ 비전 및 전략

비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
- Everywhere K- 「Pet Care Industry」 -

달성 목표

- ① [시장 확대] 국내시장 규모 : ('22) 8 → ('27) 15조원
- ② [기업 육성] 기업가치 1000억원+ : ('22) 7 → ('27) 15개사
- ③ [수출 강화] 펫푸드 수출액 : ('22) 149 → ('27) 500백만불

전략 및 과제

3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4대
주력산업
육성



- ①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 ②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 ③ [펫서비스] 인력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 ④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성장 인프라
구축



- ①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
- ②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 ③ [R&D] 「핵심 기술 + 신분야」 연구개발 확대

해외
수출산업화



- ①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
- ②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추진 체계

-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
-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

Ⅲ 세부 추진과제

1. 4대 주력산업 육성

①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미국,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펫푸드 제도 마련*('23.下 방안 마련 → '24. 제도화)
 - * 펫푸드 분류체계(주식, 간식, 특수목적식), 영양기준, 표시·광고 기준 등 개편
- 신제품 개발 촉진 위한 원료 안정성 평가 및 원료등록 확대,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23~) 및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23~)
 - * 특화제도, 원료 발굴·평가 등을 구체화하여 「펫푸드산업 육성방안」 마련('24)

②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 필수·다빈도 진료항목 부가가치세 면제*('23.10.1),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24, 20개 이상) 및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23)
 - * 예방목적 면제(기준) + 치료 목적 등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 ** 부가세 면세 효과 체감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게시, 진료비 조사분석 등 추진
-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발표('23.10) 및 비대면 진료 실증('23~'25)
 - * 의료서비스 전문화,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 등 과제 발굴·검토
- 동물병원·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판매·청구 보험 방식 도입·확산, 신규 보험상품 개발('23.下~, 금융위·농식품부)

③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 기질평가제도·행동지도사 도입('24.4),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24)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2개소) 및 동반여행 콘텐츠 확충(상품개발·관측·정보제공 등) 등 추진('23~, 문체부)
- 동물장례시설 입지 제한 완화('23), 장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4) 및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22~'24, 2개 지역)
 - * 동물장묘업('22년, 68개) 등에 대한 정보(지역, 가격, 서비스 등) 통합 제공

④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육성* 및 소 주기 종합지원**('24~)
 - *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 지정으로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자금 지원(280백만원, 기업당)
 - ** 창업 사업화 자금,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판로 확대, 네트워킹 지원 등
- 동물등록 데이터(지역·나이 등) 공개('23.下) 및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공유 확대('24~, 과기부)

2. 성장 인프라 구축

①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

- 제품·서비스의 기호성·상품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을 활용한 실증인프라 「(가칭)One-Welfare Valley」* 조성
 - * 잘 훈련된 반려동물에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성·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 ⇒ 고부가신제품 개발 촉진

②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 특수 자펀드, 정책자금 등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 확대('24~)
 - * 특수 자펀드 신규 조성('24, 100억원), 펫테크 기업을 포함하여 기술창업지원자금 확대
- 크라우드펀딩, 기술평가 지원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23~)

③ [R&D] 「핵심 기술 + 신분야」 연구개발 확대

-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R&D 프로젝트 지원 확대('23~)
 - * 질병 진단 바이오마커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암 조기진단 인공지능 모델 등
-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로드맵 마련(예비타당성조사 병행)
 - * 시스템 생물학, 줄기세포, 바이오센서, 바이오소재, 로봇틱스 등 수요 높은 연구개발 분야

3. 해외 수출산업화

①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

- 수출바우처 확대('23, 중기부) 및 유망시장(베트남 등) 조사, 전시·박람회*, 해외인증 등 시장개척 지원

* 「2023 대한민국식품대전」에 K-펫푸드관 별도 설치·홍보('23.11), 아시아 수의사대회('24, 대전)를 활용한 펫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수출 홍보 등

-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GMP**(의약품 등 안전·유효성 보장 관리기준) 인증제도 신설('23.下) 및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개발 지원('23)

②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 관계부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23.下)하여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제공 및 민간 중심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
- 펫푸드 수출검역위생조건 의정서(예, 중국) 합의 노력 지속('23)

4. 추진 체계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

- 종합적·체계적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24~)

*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등

- 기존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효과성 분석 및 제도화 추진('23~)

* 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 AI 기반 비문 활용 동물등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및 AI 기반 비대면 진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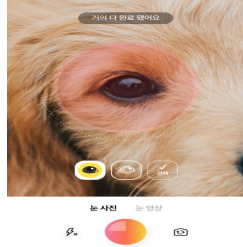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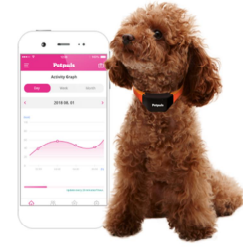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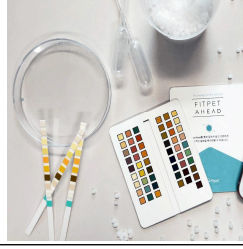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

-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 확대, 한국표준산업·직업 분류 개정('24, 통계청)*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

* 산업분류 내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직업분류 내 동물병원 수의사·동물보건사 신설 등

참고2

주요 펫테크·펫헬스케어 기업 현황

기업명 (수상연도)	사진	제품설명
브레인유 (CES 혁신상, '25)		○ 제 품 명 : VET CAI(마취 깊이 측정기) ○ 제품설명 : 동물전용 뇌파 기반 마취 깊이 측정기, 수술중 의식 수준 측정 하여 모니터링, 수술 중 각성 발생을 예방, 비침습적, 털제거 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케어식스 (CES 혁신상, '23)		○ 제 품 명 : Cotons Sense 1 Pro(웨어러블 기기) ○ 제품설명 : 비침습 방식으로 측정된 심전도, 체온 등의 건강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을 통하여 질병의예측 및 예방에 도움을 줌 * 웨어러블 기기 분야 순환계 데이터 수집, 분석 기술 인정
SKT (CES 혁신상, '23)		○ 제 품 명 : 엑스칼리버(영상 진단보조) ○ 제품설명 :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수의사의 영상 진단을 보조해주는 시스템 * 디지털 건강 분야 영상 진단 기술 인정
에이아이 포펫 (CES 수상, '22·'23, '25)		○ 제 품 명 : 티티케어(모바일 APP) ○ 제품설명 : 반려동물의 눈, 피부 등을 촬영,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하여 이상징후 분석 및 비대면 전문가(수의사) 상담 서비스 제공 * S/W 모바일 앱 분야 세계 최초 동물 질환 진단 시스템 인정 ** ces2025 수상은 Ttcare Equine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말건강관리 앱
펫펄스 (CES, '21)		○ 제 품 명 : 펫펄스(웨어러블 디바이스) ○ 제품설명 : 반려견의 음성과 이동 정보를 수집하여 AI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감정상태와 활동량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웨어러블 기기 분야 반려견 감정인식 기술 인정
핏펫 (예비유니콘선 정, '21)		○ 제품명 : Ahead(소변·구강 검사 진단키트) ○ 제품설명 : 반려동물 소변 검사기트, 구강 검사기트 등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제품서비스 * LB인베스트먼트, BRV캐피탈매니지먼트, KDB산업은행 등에서 230억원 투자 유치

- **〈펫푸드〉 Royal Canin**(1967, 프랑스) : 2001년 미국 Mars 그룹에 인수합병되었으며, 영양학 기반 펫푸드를 **92개국에 공급**(연매출 약 2조원)
 - **Pet care Center**(프랑스, 미국)와 **11개 국가**(한국 등)에 생산시설 보유
 - 종별 필요 영양 요소, 특정 질병 발현 영양 조건 연구 등 추진
- **〈펫보험〉 Trupanion**(1999, 미국) : 북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 유전 및 선천적 질환을 포괄하는 보험을 제공('21년 매출액 6.9억 달러)
 - 자사 플랫폼을 통해 퇴원 및 보험 청구에 걸리는 소요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 전략 구사
- **〈펫테크〉 Whistle**(2012, 미국) : 2016년 Mars 그룹에 인수(1.5억 달러)되었으며, GPS 기반 반려동물용 스마트워치 제조·판매
 - 반려동물 위치 및 활동(수면, 식사량 등)을 추적하는 웨어러블 장비를 기반으로 **알레르기·감염 등과 같은 이상 징후 파악**
- **〈펫헬스케어〉 IDEXX**(1983, 미국) : 반려동물 진단 및 검사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21년 매출액 35억 달러)
 - 동사 진단키트(혈액, 소변 등)를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료 정보(환자 정보, 예약, 청구 등) 관리 소프트웨어를 수의사에 공급
- **〈동물용의약품〉 Zoetis**(2013, 미국) : 화이자 자회사로 반려동물 관련 백신, 약품, 진단키트 등 개발·제공('21년 매출액 74억 달러)
 - Zoetis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규모화 및 전문화**
 - * 동물 백신 기업 Abbott Animal Health('14 인수), 분자 단위 진단 기술 기업 SMB('15 인수) 등
- **〈펫리테일〉 Chewy**(2011, 미국) : 아마존과 함께 반려동물 제품·사료 온라인 유통시장을 선도한 기업('20년 매출액 약 71억 달러)
 - * 아마존 34%, Chewy 27%, 기타 1~2% 수준으로 시장 점유(출처: APPA)
 - 펫스마트에 **인수합병**(33.5억 달러, '17)되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주문 예측, 재고 구매 및 배치 등으로 **운송·물류 최적화**